하남시으회 시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제출일 : 2024. 02. 02.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추가 규정(안 제4조의2제3항)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의원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 되는 것으로 판단됨.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・② (생	략)	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・② (현행과
		같음)
<u><신 설></u>		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
		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
		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
		휘·감독을 받는다 <u>.</u>
<u>③</u> ~ <u>⑤</u> (생 략)		$\underline{4}\sim\underline{6}$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
		지와 같음)